

# 감사위원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감사위원회 위원은 4인이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상법 제415조의 2에서 규정에 의거하여 상법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구성 방법 등은 하기와 같습니다.**

## I. 구성

1.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II.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자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 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정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참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III. 의무와 책임

1.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은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5.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IV.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되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V. 위원장

1. 위원회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VI. 회의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개최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3.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감사위원회

## VII.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개최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VIII.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IX.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한편,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내부규정인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기함으로써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